

機械工業育成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金 勝 鎮

目 次

- I. 序 論
- II. 機械工業의 保護現況과 問題點
- III. 機械工業의 支援現況과 問題點
- IV. 機械工業에 있어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V. 機械工業의 其他關聯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VI.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와 改善 方案

I. 序 論

機械工業이란 韓國標準產業分類(KSIC) 38에 該當하는 組立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을 指稱하는데 이는 다시 組立金屬(KSIC 381), 一般機械(KSIC 382), 電氣機器(KSIC 383), 輸送機器(KSIC 384), 精密機器(KSIC

385) 등으로 分類된다¹⁾. 또한 機械工業은 機能別 및 生産工程別로 基礎部品, 中間組立品, 完製品 등으로 分類될 수 있다.

이러한 機械工業은 資本財를 生産 供給하는 産業으로서 前後方關聯效果가 크고 熟練勞動者, 技術人力集約的 産業이라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物的賦存資源이 相對적으로 不足하고, 良質의 勞動力을 갖춘 우리나라가 早晚間 比較優位를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는 産業이다.

한편 生産形態面에서 볼 때 機械工業은 部品生産 및 部品組立形態의 産業으로서 部品生産의 分業化를 통한 專門生産으로부터 오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産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規模의 經濟效果를 最大限으로 圖謀하기 위해서는 企業間的 都給增進을 위한 系列化가 要請된다. 이와 아울러 機械部品生産業體와 機械部品組立業體의 技術과 施設이 均衡있게 發展되어야 機械工業의 發展이 圓滑할 것이다.

또한 機械工業은 그 發展初期段階에 巨額의 設備投資가 所要되며 製品市場의 確保가 어려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1) 機械工業內의 5個部門에 대해서 深層分析한 研究報告書는 追後에 發刊될 豫定임.

을 뿐만 아니라 특히 他産業에 資本財를 生産供給하는 産業이므로 景氣變動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機械工業은 그 發展初期段階에는 政府의 保護育成이 必要한 것으로 判斷되며, 過去 70年代 우리나라 機械工業 역시 政府에 의한 各種 保護支援을 받아 왔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機械工業에 대한 保護支援制度的 現況을 分析 評價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Ⅱ. 機械工業의 保護現況과 問題點

1. 輸入制限

가. 機械工業에 對한 輸入制限推移

1971년까지는 國內機械工業의 未發達로 輸

入自由化率이 相對的으로 높았으나, 1972年初 機械工業育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機械工業의 全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이 大幅 強化되었다(表 1 參照). 그 後 1978년에 政府의 輸入自由化 擴大方針에 따라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이 一部 緩和되었으나 1979年以後에는 계속된 景氣沈滯로 輸入自由化의 推進이 다시 停滯된 상태에 있다.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은 특히 1972年以後 他部門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電氣機器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은 매우 包括的이었다.

나. 現行 輸入制限 實態

輸入制限은 基本的으로는 輸出入期別公告에 依하고 있으나 그 以外에도 各種 特別法, 公告(例: 輸入監視品目, 輸入先 多邊化品目等)에 依하여 追加的 制限이 行하여지고 있으며, 特別法에 依한 輸入制限承認品目 및 輸入自由承認留保品目を 합하면 輸入自由化率이, 總製

〈表 1〉 機械工業 關聯製品的 輸入自由化率 推移(1968~82)

(단위: %)

	組立屬金	一般機械	電氣機器		輸送機器			精密機器	機械工業計	全産業
				電子	自動車	造船				
1968	44.4	66.7	40.0	40.0	70.4	33.3	80.0	60.5	55.9	61.7
1970	46.0	62.1	34.3	40.0	66.7	16.7	80.0	60.5	53.7	54.0
1972	38.1	37.9	17.1	10.0	59.3	0.0	80.0	42.1	38.0	51.0
1974	44.4	40.9	17.1	10.0	59.3	0.0	80.0	39.5	40.2	51.0
1976	39.7	28.8	14.3	10.0	59.3	0.0	80.0	42.1	35.4	50.5
1978	54.0	41.0	22.9	10.0	59.3	0.0	80.0	44.7	44.5	53.9
1979	77.8	47.0	28.6	10.0	59.3	0.0	60.0	47.4	54.1	68.6
1980	81.0	47.0	28.6	10.0	59.3	0.0	60.0	47.4	55.0	68.5
1981	81.0	47.0	28.6	10.0	59.3	0.0	60.0	47.4	55.0	68.6
1982	79.4	47.0	31.4	10.0	59.3	0.0	60.0	47.4	55.0	71.3

註: 1) 輸入自由化率은 CCCN 4單位 基準으로 [輸入自動承認品目數/總品目數]를 意味함. 따라서 CCCN 8單位 基準 輸入自由化率에 비하여 약간 過小評價되고 있음.

2) 各年度 上半期 輸出入期別公告基準임.

3) 輸送機器中 自動車은 CCCN 4單位 基準으로 볼 때 1972年 以來 完全 輸入制限되어 있음.

資料: 商工部, 『輸出入期別公告』, 各年度.

造業의 경우는 75.7%에서 46.0%로, 全産業의 경우는 74.7%에서 45.7%로 감소된다(表 2 參照).

機械工業의 경우 總 2,059個 CCCN 8單位品目中 期別公告를 통한 制限品目은 764個뿐이었으나 其他 特別法 및 各種 規制措置에 의한 制限品目이 330個에 이르고 있어 實質輸入

自由化率은 46.9%에 불과한 實情이다.

또한 輸入自由化率을 實際 輸入된 金額基準으로 살펴보면 品目基準으로 살펴 본 경우에 비하여 매우 낮은 輸入自由化率을 보여 주고 있다(表 3 參照). 따라서 機械工業의 경우는 需要가 많은 主要製品에 對하여 아직 輸入制限을 包括的으로 實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表 2〉 現行 輸入自由化實態(1982 上半期)

(단위: 數)

	CCCN 8單位 品目 數 (A)	期別公告上 輸入 制限 品 目 (B)	其他措置에 依한 制限 品 目 (C)	輸入自由化率(%)	
				I	II
				(A-B)/(A)	(A-B-C)/(A)
組立金屬	360	34	146	90.6	50.0
一般機械	797	306	81	61.6	51.4
電氣機器	425	243	39	42.8	33.6
(電子)	(191)	(137)	(8)	(28.3)	(24.1)
輸送機器	221	118	32	46.6	32.1
(自動車)	(67)	(66)	(1)	(1.5)	(—)
(造船)	(55)	(39)	(15)	(29.1)	(1.8)
精密機器	256	65	30	74.6	62.9
機械工業計	2,059	764	330	62.9	46.9
製造業	6,618	1,610	1,964	75.7	46.0
全産業	7,465	1,886	2,169	74.7	45.7

註: 現行 輸入自由化率이 〈表 1〉과 다른 것은 이곳에서는 CCCN 8單位 基準으로 推定하였기 때문이다.

資料: 貿易協會, 『輸入便覽』, 1982.

〈表 3〉 金額基準 輸入自由化率¹⁾

(단위: %)

	1977	1978	1979	1980	1981
組立金屬	27.6	49.9	78.6	72.9	56.3
一般機械	21.3	24.8	25.9	21.9	25.8
電氣機器	2.0	3.0	4.5	3.8	3.8
(電子) ²⁾	(0.0)	(0.0)	(0.0)	(0.0)	(0.0)
輸送機器	36.2	28.5	46.8	42.0	34.2
(自動車) ²⁾	(—)	(—)	(—)	(—)	(—)
(造船)	(10.6)	(10.7)	(19.2)	(8.0)	(4.1)
精密機器	25.4	29.7	32.5	23.0	23.6
機械工業計	18.3	21.5	28.3	23.3	22.7

註: 1) CCCN 4單位 基準으로 輸入自由化品目的 輸入額을 總 輸入額으로 나눈 數值임. 따라서 實質 輸入自由化率보다 약간 過小評價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自動車の 경우는 輸入自由品目이 전혀 없으며, 電子의 경우는 輸入自由品目的 輸入額이 總輸入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아서 나타나는 數值임.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다(특히 耐久性 消費財인 電子製品과 自動車의 경우에는 輸入이 거의 완전히 制限되고 있음).

2. 關稅

機械工業製品 특히 電子 및 自動車製品은 期別公告, 特別法 등을 통한 輸入制限 以外에 關稅를 통하여 追加保護를 받아 왔으나 關稅를 통한 保護는 量的 輸入制限때문에 큰 役割을 하지 못하였다. 즉, 高率關稅 對象品目들의 輸入이 制限되었기 때문에(例: 家電製品, 自動車, 時計 등) 機械工業에 대한 輸入額加

〈表 4〉 機械工業의 法定 및 實績關稅率(1980)
(단위: %)

	輸入額加重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¹⁾
機械工業	14.3	8.6
製造業 ²⁾	16.8	7.8

註: 1)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는 全額 減免된 것으로 假定, 實績關稅率 計算에 包含시키지 않았음.

2) 製造業에서 飲食料品 및 煙草는 除外하였음. 술·담배는 奢侈財로 看做 150%의 높은 關稅가 賦課되고 있음.

〈表 5〉 名目保護率 推計(1978)

	單純平均 法定關稅率	名目保護率
加工食品	36.3	32.0
飲料 및 煙草	132.9	20.9
建設材料	27.7	-10.3
第1 中間財	22.9	-4.9
第2 中間財	31.4	-2.5
非耐久消費財	48.5	15.6
耐久消費財*	45.1	41.2
機械*	28.8	15.5
輸送裝備*	49.8	20.7
製造業計	39.6	6.6

註: *는 機械關聯部門임.

資料: 南宗鉉,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重平均 法定關稅率은 製造業 平均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 4 參照). 實績關稅率은 他部門의 輸出用 原資材 減免이 많았기 때문에 機械工業의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製造業平均과 큰 차이가 없었다.

反面 國內와 國際 製品價格으로 比較·推定되는 名目保護率을 살펴보면 機械工業의 경우 他部門에 비해 높은 保護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5 參照). 따라서 現 關稅構造는 各種 輸入規制와 關稅減免때문에 産業保護의 정도를 적절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 保護制度의 問題點

品目에 따라 狀況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一般의 大部分 機械工業製品의 경우, 광범위한 量的 輸入制限으로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外國製品과의 競爭이 일체 배제되어 있어 品質向上 및 生産性向上을 위한 刺戟劑가 不足한 狀況이었다. 또한 量的 輸入制限은 關稅의 輸入調節機能을 마비시켜 關稅는 産業政策의 인 側面보다는 財政關稅로서의 役割이 더욱 重要視되고 있으며, 關稅構造 또한 많은 경우 商品의 國際競爭力과 關係없는 構造를 가지고 있다.

臺灣의 경우는 1974年 2月 以來 量的 輸入

〈表 6〉 韓國·臺灣의 實績關稅率

	(단위: %)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韓國	8.4	6.0	4.6	6.5	8.9	5.7
臺灣	14.1	10.8	9.4	10.1	9.8	8.0

資料: 韓國: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臺灣: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1.

制限을 거의 철폐하였으나 實績關稅率은 韓國에 비하여 계속 높은 水準을 維持하여(表 6 參照), 關稅의 輸入調節機能이 韓國보다 강한 편이다.

量的 輸入制限은 또한 產業의 國際競爭力 評價를 어렵게 만들어 政府의 效率的 產業政策 遂行에 障礙가 될 수 있으며, 制限品目的 選定 및 制限品目的 輸入許可에 대한 客觀性이 항상 問題가 될 수 있다.

Ⅲ. 機械工業의 支援現況과 問題點

1. 金融支援

가. 資金의 供給面

機械工業은 政府의 重工業化政策에 따라 1970年代 初부터 製造業中 同工業의 比重보다 훨씬 많은 資金을 供給받아 왔고, 특히 70年代 末에는 大規模機械工業體建設로 資金供給이 相對的으로 더욱 擴大되어 왔다. 물론 機械工業은 그 性格上 附加價值創出에 많은 時間이 所要되는 工業이기는 하나 70年代에 걸쳐 계속 附加價值比重보다 높은 支援을 받은 事實

- 2) 이러한 사실은 機械工業의 資本集約度를 감안하더라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機械工業의 平均資本集約度는 製造業平均보다 낮았으며, 한편 部門別로 보면 一般機械, 輸送機器部門의 資本集約度는 製造業總平均보다 높았으므로, 部門別 相對的 貸出檢討時 資本集約度의 差異를 감안하여야만 妥當하다고 判斷된다.
- 3) 部門別 資本集約度 差異를 감안할 경우 電子機器部門은 最近產業의 比重과 거의 비슷한 貸出을 받아들인 것으로 判斷되나, 電氣機器를 除外한 他部門은 資本集約度 差異를 감안하더라도 모두 相對的으로 높은 貸出을 받아들인 것으로 判斷된다.

은 機械工業에 대한 資金配分이 他工業들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好意的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²⁾(表 7 參照).

機械工業部門別로 貸出殘額의 比重과 附加價值의 比重을 살펴보면 電氣機器部門은 附加價值比重에 비하여 훨씬 적은 貸出을 받아 왔고, 其他 部門은 附加價值比重에 비하여 모두 相對的으로 높은 貸出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表 8 參照). 특히 一般機械, 輸送機器, 精密機器部門은 最近 2~3年間 相對的 貸出比重이 크게 增加하여 왔다³⁾.

나. 資金의 費用面

機械工業은 資金의 供給面에서 뿐만 아니라 費用面에서도 機械工業育成資金, 國民投資基金, 產銀資金等を 통하여 相對的으로 유리한 條件의 資金을 많이 供給받아 왔다. 즉, 總貸出額中 政策金融의 比重을 살펴보면 機械工業

〈表 7〉 機械工業에 對한 相對的 貸出比重

	製造業中 機械工業의 比重(%)		相對的 貸出比重 (A/B)
	貸出殘額基準 (A)	附加價值基準 (B)	
1968	14.9	14.0	1.06
1970	17.3	12.6	1.37
1972	15.7	11.0	1.43
1974	15.1	16.1	0.94
1976	20.3	17.1	1.19
1978	25.2	20.3	1.24
1979	27.1	19.4	1.41
1980	30.0	17.0	1.76
1981	30.6	16.4	1.80

註: 1) 貸出殘額은 預金銀行, 產業銀行, 輸出入銀行의 貸出殘額의 合計임.

2) 附加價值는 經常價格 基準임.

3) 機械國產化 資金中 많은 部分이 機械工業이 아닌 實需要者 部門에 計上되고 있기 때문에, 機械工業에 對한 實質貸出比重은 이 表에 나타난 數值보다 높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은 製造業中 가장 많은 政策金融을 받은 部門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9 參照).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의 利率 差異는 1970年代 初에는 10% 以上이었으며 1979年 末까지도 5%에 달하였으나, 1980年 以後 政府의 政策金融 縮小方針에 따라 利率 差異가 점차 縮小되어 왔으며 1982年의 6.28措置 以後에는 그 差異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政策金融中 國產機械購入資金은 特惠金融의 供給에도 불구하고 國內金利와 國際金利 특히 外國의 輸出入銀行金利와의 差異로 因하여 最近 金利差異가 縮小 혹은 逆轉될 때까지 國產機械使用을 誘導하기 위한 큰 誘因(merit)이 되지 못하였다(表 10 參照). 그러나 1982年의 6.28措置 以後 同資金의 金利가

10%水準으로 大幅引下됨에 따라 同資金에 대한 需要가 大幅 增加되어 1982年 10月末 現在 增額 策定되었던 1,586億원이 모두 消盡되었다.

다. 需要者金融

과거 우리나라의 政策金融은 주로 生産者에 貸出된 生産者金融 爲主였다. 施設投資金融 혹은 運轉資金支援의 形態로 供給되는 이 生産者金融은 潛在的 需要가 供給能力을 超過하였던 70年代에는 適切한 政策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需要不足으로 인한 低稼動率 狀況下에서 供給되는 生産者金融은 企業으로 하여금 高金利의 非制度金融에 대한 資金需要를 銀行金融으로 代替하는 効果밖에 없는 反面 需要者金

〈表 8〉 機械工業部門別 相對的 貸出比重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組立金屬	2.41	2.07	1.90	2.07	1.71	2.04	1.99	1.80
一般機械	2.11	1.54	1.57	1.91	2.60	2.50	4.13	3.70
電氣機器	0.41	0.44	0.52	0.62	0.65	0.65	0.68	0.65
輸送機器	1.03	1.76	2.22	1.81	1.26	1.72	3.04	3.25
精密機器	1.85	1.77	1.13	2.18	2.60	3.98	3.17	3.31
機械工業計	0.94	1.17	1.19	1.30	1.24	1.41	1.76	1.80

註: 總製造業 貸出中 機械工業에 對한 貸出比重을 總製造業 附加價值中 機械工業의 附加價值比 重으로 나눈 數值임.

資料: 韓國銀行

〈表 9〉 總貸出中 政策金融의 比重(1980)

	總貸出金 ¹⁾ (10億원)	政策金融 ²⁾ (10億원)	政策金融比重 (%)
機械工業	2,599.9	1,380.6	53.1
製造業	8,668.8	2,662.6	30.7

註: 1) 預金銀行, 産業銀行, 輸出入銀行貸出金의 合計임.

2) 國民投資基金, 産業合理化資金, 其他 產銀貸出 및 輸出入銀行資金, 預金銀行의 機械工業有成資金等의 計임. 國民投資基金中 機械國產化資金은 實需要者部門別로 貸出殘額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表에서는 機械工業部門의 政策金融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機械工業의 政策金融比重은 약간 過小評價되었다고 볼 수 있음.

資料: 韓國銀行.

融은 內需增大를 통하여 企業의 低稼動率을 提高시킬 수 있으리라 判斷되므로 同 需要者 金融의 擴大가 要望되는 바이다.

廣義의 需要者金融에는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資金, 產銀機械工業資金中 一般國產化 및 플랜트國產化資金, 韓銀再割資金에서 融資되는 狹義의 需要者金融과 「팩토링」(factoring) 金融 등이 있다(表 11 參照).

2. 租稅支援

機械工業은 그간 主要製品的의 경우 모두 租稅減免規制法(1966. 8. 3 制定)에 依하여 投資

金額의 一部를 法人稅·所得稅 등에서 控除받거나, 所得稅·法人稅의 時限附 減免(3年 全額, 2年 半額) 혹은 特別減價償却의 혜택을 享受하였다. 1982년부터는 直接減免이 撤廢되어 特別減價償却만이 認定되고 있으며(機械·電子工業의 경우만 投資稅額控除와 特別減價償却中 擇一)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가 새로 마련되었다.

租稅減免對象은 機械, 電子, 造船, 航空工業關聯製品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製품을 生産하는 者로서 大部分의 主要機械製品은 다 포함되어 있으나 家庭用 電子製品, 自動車 등은 除外되어 있다⁴⁾.

〈表 10〉 國際金利比較

(단위: %)

	國產機械 購入資金	外國輸出入銀行金利		
		美 國	日 本	英 國
1978. 6	15.0~16.0	8.5	7.5~8.0	8.0~8.5
1979. 6	"	8.75~9.25	7.25~8.0	7.75~8.25
1980. 6	21.0~22.0	9.0~9.5	7.5~8.75+	7.5~8.75+
1981. 6	18.5~19.5	12.0~15.0	7.5~8.75+	7.5~8.75+
1982. 3	13.5~14.5	13.5~14.0	9.10	10.00+
1982. 9	10.0	13.5~14.0	9.20	10.00+

註: 各國 모두 貸出期間 5年以上 資金基準이며 +는 fee 혹은 commission을 意味함.
資料: 韓國銀行, 『國民投資基金統計』, 1982.

The Banker Research Unit, *Export Finance Service*, various issues.

〈表 11〉 需要者金融實績推移

(단위: 億원)

	1980	1981	1982
1)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資金	410	638	1,586 ¹⁾
2) 產銀機械工業資金	319	397	500 ¹⁾
3) 狹義의 需要者金融	509	2,262	4,593 ²⁾
4) 「팩토링」金融	17	653	537 ²⁾
合 計	1,255	3,950	7,216

註: 1) 10月末 現在.

2) 9月末 現在.

4) 租稅減免規制法은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減免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事業中 同法에 規定된 事業에 對하여 直接稅의 減免을 부여하고 있다. 中小企業, 技術 및 人力開發,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 海外事業, 海外投資, 外國航行事業, 資源開發事業, 防衛産業, 地方移轉事業, 産業合理化事業, 國際金融機構, 投資促進 等.

〈表 12〉 製造業 各部門別 內國稅減免 實績(1979)

	算出租稅額 (A) (10億圓)	租稅減免額 (B) (10億圓)	租稅減免率 (B/A) (%)	總租稅減免 額中比重 (%)	附加價值 比重 (%)
製 造 業 計	269.3	57.1	21.2	100.0	100.0
飲 食 料 品	28.4	1.4	4.9	2.4	21.2
織 維, 衣 服 및 皮 革	31.0	2.4	7.7	4.2	18.2
木 製 및 同 製 品	2.9	0.0	0.0	0.0	1.7
종이, 印刷 및 出 版	12.8	2.3	18.0	4.1	3.4
化學, 石油, 石炭, 코루	81.0	12.9	15.9	22.5	20.9
非 金 屬 鑛 物	15.5	1.1	7.1	2.0	4.4
鐵 鋼 · 非 鐵	28.5	17.0	59.6	29.8	9.0
機 械 工 業	59.1	18.5	31.3	32.5	19.4
組 立 金 屬	6.7	1.1	16.4	1.9	2.3
一 般 機 械	7.9	3.2	40.5	5.5	2.3
電 氣 機 器	26.2	9.1	34.7	15.9	9.5
輸 送 機 器	16.2	4.7	29.0	8.3	4.6
精 密 機 器	2.1	0.5	23.8	0.7	0.7
其 他	10.2	1.4	13.7	2.5	1.8

註：租稅減免規制法 第12條 重要産業減免 規定에 依한 租稅減免에 限함.

資料：國稅廳

〈表 13〉 産業基地 支援施設 投資現況

(단위 : 億圓)

	工 期	總事業費	1980年까지 綜 合	1981 豫 算	備 考
既 完 工 事 業		317	210	—	
玉 浦	1974~80	182*	156*	—	造船
蔚 山	1966~80	102	43	—	石油化學 및 肥料
龜 尾	1971~80	33*	11*	—	電子
繼 續 事 業		6,870	2,771	375	
浦 項	1968~83	1,730	876	161	鐵鋼
昌 原	1974~84	624*	307*	67*	機械
溫 山	1974~87	543	391	8	非鐵金屬
麗 川	1974~87	1,013	362	15	石油化學
北 坪	1974~90	1,089	623	51	시멘트
其 他	1962~86	1,871	212	72	
合 計		7,187	2,981	375	
(機械工業) (關聯基地)		(839)	(474)	(67)	

註：*는 機械工業 關聯基地인.

資料：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1979년의 경우 機械工業에 對한 租稅減免額은 全製造業에 대한 租稅減免額中 32.5%로 가장 많았으며 平均租稅減免率(減免額/算出稅額)도 31.3%로 1次金屬 다음으로 높았다(表 12 參照). 따라서 機械工業은 他工業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많은 租稅減免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機械工業部門別로 租稅減免率을 살펴보면 一般機械工業과 電氣機器工業의 減免率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1979年 前後 完工된 大規模 一般機械 및 重電機器工場들에 대한 減免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3. 財政支援

機械工業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은 크게 財政出資, 産業基地支援施設建設, 利差補填, 工業支援을 위한 商工行政費 등으로 나눌 수 있다.

機械工業에 대한 政府의 直接出資는 1980年 및 1981년에는 韓國重工業 1個社에 국한되었으나 그 規模는 1980년에는 經濟開發費의 7.5%에 달하는 千億원(産銀出資形態), 1981년에는 經濟開發費의 6.7%에 달하는 千億원(韓電出資形態)에 各各 이르렀다.

機械工業支援을 위한 産業基地建設은 창원(機械工業), 구미(電子), 옥포(造船) 등 3個地域에 局限되었으며 投資規模는 80년까지의 支出基準으로 總 産業基地 建設費의 15.9%에 달하고 있다(表 13 參照).

政策金融에 대한 政府의 利差補填은 最近 每年 급속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總 一般會計豫算의 1%, 經濟開發豫算의 5.4%에 해당하는 805億원에 달하였다(表 14 參照). 그 중 機械工業育成을 위하여 사용된 資金(機械工業

育成資金, 造船工業育成資金, 國民投資基金의 一部, 産銀資金 一部)에 대한 利差補填이 總 利差補填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74年 以後 매년 급격히 增加하여 1979년에는 34.9%에 달하였다가 그후 약간 減少하여 1981년에는 31.1%에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機械工業支援 行政經費는 機械工業振興基金, 試驗 및 指導를 위한 行政經費, 其他經費 등으로 구성되며, 그 規模는 年度別 事業內容에 따라 <表 15>과 같이 變化하였다.

4. 支援制度的 問題點

機械工業을 幼稚産業으로 看做하여 金融支援을 實施하는 當爲性은 認定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低利의 金融支援은 高率의 인플레이션下에서 負의 實質金利를 惹起시켜(表 16 參照) 有限한 資本의 浪費를 招來하기 쉽고(주어진 生産要素現況에 비추어 지나친 資本集約의 投資誘導), 企業의 財務構造를 惡化시키는 主要要因이 될 수 있으며(銀行負債의 累積 혹은 償還期間 延期傾向), 利差補填을 위한 國民負擔을 加重시킬 可能性이 크다.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有形固定資產增加率을 보면 景氣沈滯가 極에 達했던 1980~1981年 期間中에도 지속적으로 30% 以上の 增加를 示顯하여 製造業全體의 增加率을 上廻하고 있는데, 이는 機械工業部門에 支援된 低利의 政策金融에 基因했다고 思料된다(表 17 參照).

또한 機械工業部門의 總 資本經常利益率은 1980년에는 -2.94%, 1981년에는 -0.30%로서 負의 經常利益率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全體의 製常利益率보다 낮은 水準이며

〈表 14〉 機械工業關聯資金에 대한 利差補償實績

(단위: 百萬元)

	機械工業 育成資金	造船工業 育成資金	國民投資 基金	産業金融 債券	小計 (A)	總利差 補償(B)	機械工業關聯利 差補償의 比重
							(A)/(B) (%)
1974	1,429	47	949	44	2,469	12,727	19.4
1975	1,089	50	2,059	31	3,229	16,698	19.3
1976	778	59	4,677	37	5,551	24,940	22.3
1977	591	59	7,612	26	8,288	27,761	29.9
1978	234	37	8,151	28	8,450	27,655	30.6
1979	274	35	19,062	33	19,404	55,677	34.9
1980	104	22	16,367	42	16,535	54,325	30.4
1981 ³⁾	27	10	24,906	80	25,023	80,523	31.1

註: 1) 國民投資基金 중 機械工業을 위하여 쓰인 資金(國產機械購入, 特殊銅除外 機械工業體建設, 計劃造船, 防衛産業, 造船所建設, 電氣電子, 産業機械化, 延拂輸出資金 등)이 차지하는 比重을 利用 推定.

2) 總産銀貸出 중 機械工業에 관한 貸出比重을 利用推定.

3) 豫算基準임.

資料: 財務部

〈表 15〉 機械工業支援行政經費推移

(단위: 百萬元)

	農 業 機 械 化	造船工業 育 成	機械工業 育 成	電氣電子 工 業	精密機器	航空工業	計
1972	3,152	950	1,781	7,182	48	—	13,113
1973	662	—	1,250	105	112	—	2,129
1974	217	—	1,448	15	385	—	2,065
1975	532	—	2,474	51	722	—	3,779
1976	—	—	945	—	810	—	1,755
1977	140	3,071	1,726	67	934	—	5,938
1978	526	3,448	1,913	66	1,059	—	7,012
1979	1,126	2,681	2,291	59	763	—	6,920
1980	23,839	2,096	4,431	74	3,255	626	34,321

資料: 財務部, 『決算書』, 各年度.

〈表 16〉 主要貸出의 實質金利 推移

(단위: %)

	(1) 商業어음 割引率 ¹⁾	(2) 機械工業 育成資金의 貸出金利	(3) 國民投資基 金中計劃造 船의 貸出 金利	(4) GNP 디플레이터 上昇率	實 質 金 利		
					商業어음割引 (=(1)-(4))	機械工業育 成資金貸出 (=(2)-(4))	國民投資基金 貸出計劃造 船(=(3)-(4))
1974	15.5	11.3	10.5	29.6	-14.1	-18.3	-19.1
1975	15.0	12.0	12.0	24.7	-9.7	-12.7	-12.7
1976	17.0	13.0	12.3	17.7	-0.7	-4.7	-5.4
1977	15.0~18.0	13.0	10.3	16.3	1.7~-1.3	-3.3	-6.0
1978	18.5	15.0	11.0	20.6	-2.1	-5.6	-9.6
1979	18.5	15.0	11.0	19.3	-0.8	-4.3	-8.3
1980	22.5	20.2	16.0	25.8	-3.3	-5.6	-9.8
1981	18.0	17.0	14.0	20.5	-2.5	-3.5	-6.5

註: 1) 優良業體에 대한 預金銀行의 어음割引率임.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表 17〉 有形固定資産 増加率¹⁾ 推移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製造業 總括	33.42	36.28	29.32	26.10	36.56	33.54	27.05	22.23
機械工業	44.92	48.74	36.40	41.46	39.23	38.37	32.34	30.18
組立金屬機械器 ¹⁾	24.51	24.47	41.64	44.72	26.78	47.41	46.85	52.00
一般機械器	43.41	35.21	58.42	80.22	86.68	71.64	25.31	41.11
一電氣機器	34.33	42.96	47.16	46.89	62.21	62.83	25.34	15.96
輸送機器	57.80	58.36	27.49	24.25	29.33	33.04	18.26	36.63
精密機器 ²⁾	3.13	55.61	47.59	35.78	11.91	33.51	24.10	10.29

註 : 1) 有形固定資産増加率 = $\frac{\text{當期有形固定資産增加分}}{\text{前期末有形固定資産}} \times 100$

2) 精密機器는 包含한 其他 機械工業分野인.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表 18〉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¹⁾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製造業 總括	5.66	3.88	4.61	4.53	4.98	3.37	-0.23	0.02
機械工業	6.86	6.84	4.41	5.95	2.82	1.86	-2.94	-0.30
組立金屬機械器 ¹⁾	13.36	11.99	8.99	8.01	3.98	0.55	1.68	-3.27
一般機械器	6.13	8.05	4.42	4.27	5.71	2.56	-9.56	-1.30
一電氣機器	9.10	10.58	8.16	6.20	4.67	3.45	-0.86	3.16
輸送機器	4.18	2.82	0.98	5.22	0.89	-0.20	-3.78	-1.69
精密機器 ²⁾	15.87	11.05	19.96	20.22	7.30	10.82	11.28	10.42

註 : 1) 總資本經常利益率 = $\frac{\text{經常利益}}{\text{總資本}} \times 100$

2) 精密機器는 包含한 其他 機械工業分野인.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表 19〉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日本)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組立金屬機械器 ¹⁾	5.2	0.9	2.3	1.7	2.6	4.0	3.1
一般機械器	5.2	2.7	2.9	3.1	3.6	5.2	5.2
一電氣機器	3.5	2.0	4.4	4.2	4.4	5.3	5.2
輸送機器	2.5	2.9	4.4	4.4	4.2	4.7	4.3
造船機器	4.3	3.5	4.0	2.3	-1.6	-0.4	1.4
精密機器 ²⁾	2.5	3.4	4.5	5.1	5.3	5.7	6.2

註 : 1) 造船工業 除外.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2.

〈表 20〉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臺灣)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組立金屬機械器 ¹⁾	2.4	-1.8	0.7	-0.3	4.0	4.0	3.2
一般機械器	5.9	12.6	3.6	5.8	3.0	3.0	3.1
一電氣機器	10.6	8.3	10.1	9.3	8.3	8.3	7.0
輸送機器	6.7	11.6	8.0	13.1	5.2	4.2	3.7
造船機器	2.4	28.2	8.2	2.9	-16.7	-21.8	-9.6
精密機器 ²⁾	4.3	3.9	4.5	5.4	5.0	4.8	4.1

註 : 1) 造船工業 除外.

2) 精密機器는 包含한 其他 機械工業分野인.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2.

(表 18 參照), 日本 및 臺灣에 比較하여는 훨씬 낮은 水準이다(表 19, 表 20 參照). 이는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低利金融支援이 助長한 非效率性이라고 判斷되며, 더우기 複雜多岐한 政策金融體制는 金融支援의 效果判斷을 어렵게 만들어 效率적인 幼稚產業育成戰略에 蹉跌을 가져올 可能性이 크다.

租稅減免 역시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하여 그 必要性은 認定되고 있으나 政府가 對象品目을 選定하고 支援을 實施하는 것은 機械工業의 複雜性, 世界市場의 急速한 變化速度等을 감안할 때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判斷되는 反面 機械工業의 거의 모든 主要製品에 대하여 모두 租稅·金融特惠를 賦與하는 것은 支援의 效果를 半減시켜 幼稚產業發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Ⅳ. 機械工業에 있어 技術開發을 위한 技術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制度 現況

가. 稅制上的 支援制度와 그 現況

技術開發投資의 誘因을 위한 現行 稅制上的 支援制度는 損金處理의 認定, 稅額控除 및 特別減價償却의 認定 등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技術開發에 所要되는 費用充當을 위해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計上을 認定하는 制度이다. 電氣·電子를 포함하는 機械工業은 1978年 製造業 積立額의 46%를 寄與하였고 本 積立金 使用額의 49%를 차지하였다(表 21 參照).

②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

企業으로 하여금 當該年度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10%를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할 수 있게 하는 制度이다.

③ 研究用品의 關稅減免

政府出捐의 研究機關이 研究用品으로 輸入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關稅가 免除되고 있다.

④ 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支援

新規開發技術의 企業化 및 研究試驗·職業訓練用 施設投資에 대하여 投資稅額控除(6~10%)와 一時償却(資產取得原價의 50%內의 特別償却) 中 하나를 選擇 適用받을 수 있게 하는 制度이다.

(表 21) 業種別 準備金 積立·使用現況(1978年度 準備金 積立業體) (단위: 億원)

	業體數	積立額	使用額		使用率(%)
			構成比	構成比	
製 造 業	147	293	100.0	239	79
非 鐵 金 屬	5	6	2.0	5	86
金 屬	11	9	3.1	9	90
電 氣 電 子	20	52	17.7	50	97
機 械	46	84	28.7	68	81
其他 製造業	65	142	48.5	107	75

資料: 科學技術處

⑤ 技術開發 先導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 暫定稅率 適用

1982年末 現在 「VTR」, 「비디오테이프」 및 「마이크로웨이브 오븐」等 3가지 品目は 技術開發 先導品目으로 指定되어 있으며, 各各에 대한 現行特消稅 基本稅率은 40%, 40%, 28% 인바 同 品目들에 대해 實際로 適用되는 稅率은 82年 以後 처음 4年間은 基本稅率의 10%, 5年次에는 基本稅率의 40%, 6年次에는 基本稅率의 70%를 各各 賦課하도록 되어 있다.

⑥ 國內로 誘致된 外國 技術者의 所得에 대해서는 勤勞 始作 以後 첫 5年間 勤勞所得稅를 免除하여 주고 있다.

⑦ 技術導入 契約에 의하여 技術提供者에게 支拂되는 代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는 技術提供後 5年間은 全額免除되고 그 후 3年間은 50%가 減免된다.

⑧ 技術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 實用新案權의 讓渡 및 貸與로 인한 所得稅는 5年間 免除된다.

⑨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플랜트 엔지니어링」, 綜合建設技術用役 그리고 專門技術用役 등과 같은 技術用役事業은 事業開始後 5年間 所得金額의 50%를 控除받게 된다.

⑩ 以上の 여러 支援 以外에도 公認技術振興團體等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損金處理 認定, 試驗研究와 開發費의 任意償却 許容, 職務와 關聯된 優秀發明으로 使用者로부터 支給받은 補償金에 대한 所得稅 非課稅 等에 의한 稅制上 支援制度가 實施되고 있다.

나. 金融上의 支援制度와 그 現況

技術開發支援 金融機關으로는 韓國產業銀

行, 長期信用銀行, 中小企業銀行,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 韓國技術振興株式會社(KAIST開發技術企業化 支援機能), 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 등이 있으며 이들은 新製品의 研究開發, 新技術의 企業化, 技術導入 및 訓練, 製造工程의 改善 그리고 「엔지니어링」事業 等を 支援하여 주고 있다.

1982年 6月末 現在 技術開發支援實績은 508 億원인데 이 中 韓國產業銀行은 63%,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는 21%, 그리고 中小企業銀行은 16%를 各各 供給하였다(表 22 參照).

〈表 22〉 技術開發을 위한 貸出實績

(단위 : 億원, %)

	1979	1980	1981	1982年 6月末 現在	構成比
韓國技術開發 株式會社	—	—	94	107	21
韓國產業銀行	36	33	45	320	63
中小企業銀行	4	32	146	81	16
長期信用銀行	4	—	6	—	—
計	44	65	291	508	100

資料 : 科學技術處

다. 其他 支援制度와 그 現況

① 技術振興擴大會議 設置運營

政府는 1982年初부터 汎國家的으로 技術向上을 推進하겠다는 政策意志를 具現하기 위하여 大統領 주재로 技術振興擴大會議를 設置運營해 오고 있다.

② 產業技術研究組合의 結成

政府는 研究開發活動을 單獨으로 遂行하기 어려운 中小企業들의 共同研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하여 產業技術研究組合의 設立을 獎勵하고 있다.

產業技術研究組合에 대해서는 長期低利資金의 優先支援, 政府가 所有한 工業所有權의 無

〈表 23〉 産業技術 研究組合 設立現況

既 設 立('82.1~'82.5)	推 進 中
필 름 콘 텐 서 研究組合	自動車部品分野 8個 電子 部品 分野 5個
해 드 램 프 研究組合	
클 러 치 研究組合	
컴비네이션램프 研究組合	
遺 傳 工 學 研究組合	

資料：科學技術處

償利用 特典賦與 等 여러가지 支援政策이 實施되고 있으나 1982年 5月 現在 既設立된 研究組合은 5個에 不過하다(表 23 參照).

③ 技術用役業의 育成

個別專門技術을 組織化하여 새로운 産業시스템을 創造하는 技術用役業을 育成하기 爲해 政府는 1981年末 技術用役育成法 및 施行令을 改正하고 金融支援條項을 明示的으로 規定함으로써 金融面에서의 優先的인 支援을 可能하도록 하였다.

④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의 設立

政府는 企業活動을 爲한 産業技術 및 海外經濟에 관한 情報를 蒐集, 提供하게 하기 爲하여 1981年 1월에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을 設立한 바 있다.

2. 技術開發을 爲한 支援制度의 問題點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技術開發을 爲한 政府의 積極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技術水準은 先進國에 비해서 현저하게 低位에 있어 우리의 國際競爭力 提高에 가장 큰 障礙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低技術水準의 主原因은 물론 우리의 日淺한 近代化의 歷史, 科學水準의 低位, 高級科學技術人力의 不足, 未洽한 先進技術導入, 自體技術蓄積의 貧

困, 未洽한 研究開發投資 등에 의한 我們的 技術開發能力의 低位에 起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들이 積極的으로 技術革新을 하는 風土가 造成되지 못하였고 또 政府의 支援만 있으면 技術開發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리라는 安易한 着想 등에도 起因하였다고 判斷된다. 換言하면 企業의 安易한 利潤追求와 技術開發에 대한 認識의 不足때문에, 또 政府의 重點開發戰略의 未備와 技術開發을 誘發하지 못한 産業政策때문에 技術開發이 難關에 逢着하였다고 思料된다. 그러므로 技術開發을 促進시키기 爲해서는 첫째, 技術革新風土가 造成되어야만 하며, 둘째, 技術開發能力이 提高되어야만 하며, 셋째, 技術支援制度가 改善되어야만 할 것이다.

V. 機械工業의 其他關聯 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國產化政策

가. 國產化政策의 現況

1) 標準國產化率의 公告

標準國產化率은 産業設備建設에 있어서 實需要者의 源泉的 國產化를 誘導하기 爲하여 最小限度의 國產化 義務率을 賦課하는 指標로서 導入施設機械 事前申告制와 같이 1976年 3月부터 實施된 制度이며, 標準國產化率의 公告는 1976年 3월에 6個業種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後 점차 擴大되어 23個業種에 이르고 있다(表 24 參照).

2) 導入機械施設 事前申告制度

國內에서 生産할 수 있는 機械施設의 導入

을 抑制코자 美貨 百萬弗 以上の 機械施設을 導入하고자 하는 者는 機械工業振興會(81年 7月 以前에는 商工部)에 事前申告하여 國產供給 可能與否의 檢討와 國產化率 承認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1976年 3月부터 實施), 同制度와 標準國產化準 公告制度에 의하여 百萬弗 以上 導入機械施設의 國產化 比重은 1976年 以後 점차 向上되었다(表 25 參照).

〈表 24〉 標準國產化率 適用對象事業

實施時期	事業名
1976. 3. 19	시멘트, 비료, 메탄올, 火力發電, 精油, 포르말린
1977. 2. 7	폴리에틸렌, 나프타分解, 합성고무, 폴리에스터, 製鐵
1977. 12. 30	PVC, 폴리프로필렌, 가성소다, 水力發電
1979. 5. 17	原子力發電, 카프로락탐, 製紙
1980. 4. 17	다이아, 工業用 液化가스
1981. 1. 29	VCM, EDC, 소다회

資料：韓國機械工業振興會

〈表 25〉 導入機械施設 國產化 實績

	申告件數	申告金額 (百萬弗)	國產化 金額 (百萬弗)	國產化 比率 (%)
1976 (3~12)	51	1,524.9	388.9	25.5
1977	80	1,770.7	557.3	31.5
1978	122	2,457.5	808.0	32.9
1979	165	1,742.0	668.8	38.4
1980	102	1,339.2	671.1	47.9
1981	119	734.8	297.2	40.4

資料：韓國機械工業振興會

3)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國產化促進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KFX資金으로 外產機械를 購入하고자 할 경우 이의 國產機械 使用可能性與否를 商工部長官에게 事前問議하도록 國務總理 指示事項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1981年 7月부터 實施되어 왔다(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現況은 <表 26>과 같음).

이러한 制度의 實施가 要請되기까지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이 不振한 理由로서는 첫째, 購入資金의 制約과 둘째, 需要機關의 外產機械 選好傾向이 그 主要原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즉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機械設備를 購入하고자 할 경우 內資不足으로 國產機械購入이 制限되고, 借款資金에 의한 機械購入은 國際入札이 不可避하기 때문에 價格 및 非價格競爭力面에서 不利한 國產機械의 購入이 制約받아 왔다. 아울러 需要機關은 國產機械의 使用이 充分한 경우에도 (例를 들면 工高實習用機械) 필요이상의 高級機械를 使用하고자 하는 性向이 있어 結果적으로 低稼動率에 허덕이는 國內機械工業界를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26〉 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 現況
(1978年 基準) (단위: 百萬원)

	購買額 (A)	國產機械 (B)	外產機械	國產 使用率 (B/A)
一般機械	77,236	41,366	35,870	53.6%
精密機器	23,810	12,587	11,223	52.8%
輸送機器	143,551	78,333	65,218	54.5%
計	244,597	132,286	112,311	54.1%

資料：韓國銀行, 『産業聯關分析表』, 1980.

4) 國產機械購入資金支援

機械工業에 대한 金融支援은 1968年 財政資金에 의한 機械工業資金 12億원을 產業銀行과 中小企業銀行을 통하여 放出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그 해 政府는 韓國銀行으로 하여금 財政資金 50%, 金融資金 50%의 比率에 따른 財源을 確保하고 이를 機械工業育成을 위한 資金으로 支援하도록 制度化하였다. 특히 1969年 1月에 새로이 「機械工業育成資金 取扱規程」이 制定되면서 同資金에 의한 支援이 本格化되었다. 이 制度는 取扱銀行이 造成하는 金融資金으로 財源을 充當하고 同資金

의 貸出金利와 一般貸出金利와의 差異를 政府豫算으로 補填하는 方式을 취하여 오다가 1974年 國民投資基金法이 制定됨에 따라 그 財源을 國民投資基金으로 轉換하였다.

國民投資基金中 國產化促進을 위하여 使用되는 資金으로서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支援實績은 <表 27>과 같다.

<表 27> 國產機械 購入資金의 支援實績

(단위 : 億원)

	1978	1979	1980	1981	1982(P)
總 額	346	345	410	638	1,586
一般國產化	171	173	244	520	n.a.
플랜트國產化	174	172	147	107	n.a.
國產一號機	—	—	20	11	n.a.

資料 : 機械工業振興會

5) 國產機械品質保障制度

機械類品質保障 및 瑕疵保證制度는 1968年 4月에 韓國機械工業振興會로 하여금 實施하게 한 以來 81년까지 運用되어 왔으나 契約額의 10%를 瑕疵保證金으로 積立하는 것이 業界의 資金壓迫을 加重시킬 憂慮가 있고 紛爭調整을 業界의 自律機能에 맡겨도 無妨하다는 政府의 判斷에 의하여 廢止되었으나, 이러한 機械類品質保障制度가 廢止된 以後 實需要자들이 機械瑕疵發生에 따른 被害를 補償받지 못해 國產機械에 대한 不信이 높아가는 實情을 감안하면 國產機械의 需要를 創出하고 信賴度を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 復活이 바람직하다.

6) 新規開發機械(國產 一號機)에 대한 支援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된 新規開發機械類에 대하여 重點支援을 함으로써 機械類의 國產化와 技術開發促進을 圖謀하고자, 1979年 4月에 商工部 公告 第79-43으로 告示된 新規開發機械類 申告要領에 依據하여 申告된 機械類에 대

하여 審査를 거쳐 合格된 製品을 國產一號機로 指定하는 制度이다. 新規開發機械의 要件은 i)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된 品目, ii) 國產化率(金額基準)이 60% 以上, iii) 外國技術導入없이 自體開發된 品目, iv) 性能檢査結果 國際水準品, v) 價格面에서 國際競爭力을 保有하고 있는 品目, vi) 商工部長官 및 審査委員會에서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品目 等이다.

新規開發機械로 指定된 品目이 받을 수 있는 惠澤은 i) 官需購買時 隨意契約締結品目으로 指定되며, ii) 新規開發品の 生産을 위한 施設投資에 所要되는 內外資를 優先支援받고, iii) 新規開發品の 生産에 必要한 生産資金을 支援받으며 vi) 國產一號機 購入資金을 支援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1979年 이 制度를 施行한 以來 1981年 9月까지 新規開發機械로 指定된 品目數는 總 79業體 92個品目이다.

나. 國產化政策의 問題點

이제까지의 國產化政策의 特徵은 한마디로 말하여 政府主導下的 選別的 資金支援 및 輸入禁止等 直接的 支援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政府의 直接支援政策은 機械工業分野에 있어서 生産基盤을 構築하게 한 點은 否認할 수 없으나, 國產化政策分野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로 指擣되는 國產機械類品質水準과 需要者の 國產機械에 대한 認識不足等을 考慮하지 않은 채 一律的인 政策이 施行되어 온 점도 看過할 수 없다.

이러한 國產化政策의 功過를 돌이켜 볼 때 向後的 國產化政策은 長期的인 觀點에서의 機械類品質向上 및 이에 따른 需要者の 國產機械에 대한 信賴도가 提高될 수 있도록 技術開

發의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漸進的인 輸入自由化를 통하여 機械類實需要者를 保護하고 健全한 競爭基盤을 構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機械工業界의 技術水準이나 財務構造等의 現況을 考慮할 때 機械工業의 長期的 發展을 위해서는 制限的인 支援이 繼續 必要하다는 點도 留意하여야만 할 것이다.

2. 特別消費稅制

가. 制 度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은 크게 4種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第2種에는 大部分의 機械工業關聯製品이 包含되어 있으며 그 中 大部分은 家庭用 電子製品이고 그 以外 自動車, 요트, 피아노, 時計, 光學機器等이 課稅對象에 包含되어 있다.

特消稅의 實質的 負擔은 防衛稅(特消稅의 30%) 및 附加價値稅의 追加負擔을 생각할 경우 名目稅率보다 매우 높은 狀況이다(例: 特消稅 名目稅率이 40%일 경우 實質負擔은 $[1 + (0.4 \times 1.3)] \times 1.1 = 1.672$ 로서 67.2%에 이

〈表 28〉 彈力稅率 適用品目 및 稅率
(1982年 11月 基準)

品 目	基本稅率	彈力稅率
乘用車 1,500cc 以下 1,500~2,000cc	15%	10.5%
	20%	14%
		(82. 12. 31 까지)
揮 發 油	160%	130%
輕 油	10%	7%
칼 라 TV 大型	40%	28%
		(82. 6. 30 부터)

資料: 特別消費稅法

르고 있음).

그리고 特消稅率은 景氣調節機能을 고려하여 基本稅率의 上·下 30% 範圍內에서 法律의 改正없이 大統領令으로 彈力稅率을 適用可能케 되어 있는데 現行 適用品目 및 稅率을 列舉하면 〈表 28〉과 같다.

또한 2種에서 規定된 物品中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物品으로서 輸出戰略上 內需基盤의 擴大가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暫定稅率이 適用될 수 있는데, 最初 4年間에는 基本稅率의 10%, 다음 1年間에는 基本稅率의 40%, 그 다음 1年間에는 基本稅率의 70%의 特消稅率이 適用된다. 이 暫定稅率의 適用對象品目을 要約하면 〈表 29〉와 같다.

〈表 29〉 暫定稅率適用品目 및 稅率
(1982年 11月 基準)

	基 本 稅 率	暫 定 稅 率		
		1982~85	1986	1987
VTR	40%	4%	16%	28%
Video Tape	40	4	16	28
Microwave Oven	28	2.8	11.2	19.6

資料: 特別消費稅法

나. 機械工業 關聯製品에 대한 特消稅 徵收實績 및 效果

機械工業 關聯製品 특히 家庭用 電子製品, 自動車 등은 그간 奢侈財로 看做되어 高率의 特消稅가 賦課되어 왔는데, 1979年과 같은 경우에는 機械工業 關聯製品에 대한 特消稅額이 全製造品에 대한 特消稅 總額中 34.5%에 達하였다(油類를 包含할 경우 이 比率은 78.2%에 이르고 있음)(表 30 參照).

이에 따라 특히 自動車와 같은 경우는 自動

車 및 揮發油에 대한 高率의 特消稅로 인하여 國內需要가 所得對比 현저히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며⁵⁾, 高率의 特消稅는 家電製品들의 需要增加에도 하나의 障礙要因이 되어 왔다.

다. 問題點

우리나라 機械工業部門의 技術蓄積 및 輸出 增大을 위한 國際競爭力 確保를 위해서는 內需基盤의 構築이 要求되는데 高率의 特消稅는 內需增大에 대한 하나의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특히 揮發油에 대한 高率의 特消稅는

〈表 30〉 特別消費稅 徵收實績

(단위 : 10億원)

	1978	1979	1980	1981
機械工業製品	118.0	166.6	109.5	141.8
(電氣機器)	(90.1)	(119.2)	(84.5)	(117.9)
(自動車)	(23.3)	(35.8)	(20.6)	(19.2)
油 類	120.5	210.6	362.7	352.1
飲 料	23.1	20.1	24.7	28.8
砂 糖	32.2	39.5	54.7	66.2
其他製造品	27.6	45.8	51.3	59.9
製造品計	321.4	482.6	602.9	648.8
入場行爲計	2.8	3.2	3.3	3.6
輸 入 分	8.9	13.5	6.8	11.2
特別消費稅計	333.1	499.2	613.1	663.6
間 接 稅 計	1,382.8	1,873.4	2,404.0	2,916.8
內 國 稅 計	2,252.5	3,037.5	3,675.8	4,595.8
國 稅 計	3,652.2	4,767.6	5,814.9	7,268.1

註：特別消費稅는 賦課基準이나 徵收基準과 거의 同一함

資料：國稅廳, 『國稅統計年報』.

5) 所得(1人當 GNP) 對比 自動車保有臺數(臺/千人)의 國際推移는 다음과 같은 回歸方式으로 推定된다. 1976年 現在 世界 75個國에 대해서 自動車保有臺數(臺/千人; A)와 1人當 GNP(PGNP)를 單純回歸方程式에 의하여 推定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 A = -5.1553 + 1.2144 \ln PGNP; R^2 = 0.8997 \quad (25.59)$$

同 回歸方程式에 의해서 우리나라 所得水準에 相應하는 自動車保有臺數는 41.6臺/千人인데 反하여 1980年 現在 우리나라 自動車の 實際保有臺數는 6.6臺/千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乘用車 國內需要 不振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며 기타 家電製品의 경우에도 特消稅는 需要增加의 커다란 沮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3. 系列化·專門化 推進

他産業에 비해 聯關效果가 큰 機械工業이 開發戰略産業으로서 發展하기 위해서는 專門 生産技術을 保有한 中小企業의 系列化 및 專門化의 推進이 急先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機械工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比重은 製造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보다 相對的으로 낮은데, 이는 機械工業의 下部構造가 脆弱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自動車工業과 電子工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 31 參照).

또한 우리나라의 機械工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日本의 그것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電子工業部門에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이 相對的으로 落後된 것을 立證하고 있다.

政府는 中小企業系列化의 促進을 위하여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1978. 12. 5 改正)을 制定하여 系列化特定業種 및 指定系列化品目指定, 部門別 專門化 및 系列化業體指定, 中小企業型 專門機械工場指定, 系列化審議會構成 등 一連의 措置를 취하였다. 그리고 系列化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業體當 施設資金은 5億원 以內, 運轉資金은 1億원 以內에서 資金支援을 하며, 系列化承認業體에 대하여는 最高 10億원의 信用保證基金을 支援하여 주고 있다.

또한 金融機關에 의해 適格業體로 選定된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0.5%포인트 低率의 優

待金利를 適用하고 있으며, 母企業에 대한 稅制支援과 아울러 母企業과 受給企業(中小企業)간의 利害問題를 自律적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 系列化促進協議會를 設置(1981.6.1)하였으나, 中小企業 支援制度上 金融支援面에서 貸出期間이 짧고 節次가 複雜하며, 그에 따르는 附帶費用이 過多할 뿐만 아니라 信用保證 業務遂行이 困難하여

滿足스러운 成果를 成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稅制支援面에서도 代金決濟보다 먼저 納稅를 해야되기 때문에 資金壓迫을 받으며 技術開發에 대한 稅制支援이 微微하고 中小企業들의 技術開發能力未備, 納期問題·製品價格·製品規格·代金決濟 등으로 인한 利害對立, 國內市場의 狹小性, 國際下請制度의 未發

〈表 31〉 中小企業¹⁾의 比重

(단위 : %)

	分 類	事業體數		從業員數		出 荷 額		附加價值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1975	製 造 業	96.2	99.5	45.7	70.7	30.8	51.3	31.7	56.9
	機 械 工 業	95.8	99.2	44.9	59.7	31.2	40.7	32.6	46.6
	自 動 車 工 業	92.0	97.8	35.6	35.6	15.4	16.8	21.5	23.3
	電 子 工 業	81.1	96.6	23.4	45.6	15.3	24.1	14.4	26.3
1979	製 造 業	96.5	99.5	47.8	73.5	32.2	53.2	35.2	56.7
	機 械 工 業	95.3	99.2	41.6	62.1	28.4	40.9	34.6	46.7
	自 動 車 工 業	94.3	97.6	31.5	35.6	12.0	16.2	17.8	20.8
	電 子 工 業	85.4	96.9	24.5	48.7	15.5	24.9	19.2	27.0
1980	製 造 業	96.6	n.a.	49.6	n.a.	32.0	n.a.	35.2	n.a.
	機 械 工 業	95.6	n.a.	43.6	n.a.	29.0	n.a.	33.0	n.a.
	自 動 車 工 業	94.6	n.a.	31.1	n.a.	13.9	n.a.	26.0	n.a.
	電 子 工 業	85.5	n.a.	26.4	n.a.	15.9	n.a.	19.1	n.a.

註 : 1) 從業員 299人 以下 企業을 中小企業으로 分類하였음.

資料 : 金栽元, 『系列化的 現況 및 問題點』, 韓國開發研究院, 1982. 7.

〈表 32〉 受給依存度¹⁾(製造業)

(단위 : %)

	韓 國 (1980)	日 本 (1966)
全 製 造 業	30.1 (40.7) ²⁾	53.6
1~ 3(名)	—	52.3
4~ 9	—	53.7
5~ 9	18.1 (22.5)	—
10~ 19	27.2 (34.5)	54.8
20~ 29	} 38.3 (52.0)	54.5
30~ 49		55.6
50~ 99		50.9
100~ 199	50.1 (63.1)	56.6
200~ 299	48.5 (54.0)	55.5

註 : 1) 全事業體數에 대한 受給企業比率(%). 임.

2) () 內는 機械工業의 受給依存度임.

資料 : 金栽元, 『系列化的 現況 및 問題點』, 韓國開發研究院, 1982. 7.

達, 相對的으로 높은 生産費用, 政府支援制度의 不合理性 등으로 最近까지 專門化·系列化는 所期の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며 <表 32>에 表示된 것처럼 韓國의 全製造業 部門에 있어서의 受給依存度는 1980年 現在 30.1%로서 日本의 1966年の 受給依存度인 53.6%에 비해 크게 低調한 實情이다.

Ⅵ.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와 改善方案

1.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와 機械工業育成的 基本戰略

機械工業은 70年代에 集中的인 政府支援을 받은 重化學分野에서 가장 核心的 部門이었으며 政府의 集中的 支援은 지금도 繼續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集中的 支援에도 不拘하고 機械工業이 아직도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支援의 幅과 規模의 問題이기 보다는 方法의 問題로 判斷되며 이러한 支援方法上的 問題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機械工業 全般에 걸친 輸入規制는 國際競爭을 차단하여 低品質의 內需用 製品生産

을 促進하였다.

둘째, 低品質製品 爲主의 生産體制는 市場 擴大를 不可能하게 하였던 바 이는 또한 機械工業製品의 品質向上에 必要한 專門化와 系列化에 對한 障礙要因이 되어 왔다.

셋째, 國內市場의 保護와 實質水準 「마이너스」의 政策金利下에서 提供된 金融 및 租稅支援은 過度한 投資를 誘導하여 構造的 不況産業을 招來하였다.

넷째, 機械工業의 過保護는 技術開發動機를 弱化시켜 各種 技術 및 人力開發 支援施策의 積極的인 活用을 沮害하였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을 認識할 때 向後 機械工業 育成을 爲한 基本戰略은 다음과 같다.

① 需要의 擴大

規模의 經濟에 立脚한 機械工業 生産體制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機械工業製品에 대한 最小限의 需要가 確保되어야 한다⁶⁾.

② 國際競爭의 導入

輸出指向의 機械工業構造를 發展시키고 非效率의 品目에의 投資가 止揚되어야 한다.

③ 技術開發의 支援

機械工業의 發展은 企業人의 技術開發能力에 依存하는 만큼 積極的 技術開發支援이 要望된다⁷⁾.

2. 機械工業育成政策의 改善方案

가. 輸入規制의 大幅 縮小와 關稅의 輸入調節 機能 強化

現行 機械工業에 대한 保護政策은 輸入의 量的 規制와 關稅를 통한 規制 등 二重의 構造를 가지고 있는 바, 輸入의 量的 規制는 國

6) 多品種小量生産의 特性을 갖는 部品産業의 育成에 있어 國內市場의 狹小함으로써 惹起되는 機械工業育成的 制約性에 대해서는 追後 研究할 豫定임.

7) 國內技術水準은 機械工業의 國際競爭力을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이기 때문에 機械工業에 있어 國內技術水準, 世界技術動向과 技術測面에서의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比較優位展望 등에 대해서는 追後 研究할 豫定임. 다만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에 관해서는 金珍佑,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 韓國開發研究院, 1982. 12을 參照바람.

內市場에 있어서의 潛在的 國際競爭可能性까지 排除시켜 國內産業의 競爭力向上에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可能性이 있으므로 安保 保健 등 不可避한 極少數 製品에 限定시키고 輸入規制政策은 關稅制度 하나로 統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保護가 꼭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一部 機械製品들의 경우에는 量的 輸入制限의 撤廢와 同時에, 補完的으로 關稅率을 引上함으로써 初期에는 量的 輸入制限과 같은 效果를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量的 輸入制限과 關稅을 통한 保護는 國內業界에게 크게 다른 意味를 附與할 것이다.

그리고 期別公告의 縮小日程 計劃에 關해서는 政府·業界·學界가 共同으로 곧 具體的 作業을 수행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實施計劃을 確定하고 事前 豫示할 것이 絶실히 要請되고 있다.

나. 金融支援制度의 改善

1) 金融正常化

幼稚産業인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한 金融支援은 負의 實資金利로 因한 資本의 浪費와 財務構造의 惡化를 防止하고 利差補填으로 因한 國民의 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利子率面에서 보다는 資金供給面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一般 商業銀行은 一般資金을 供給하고 開發銀行은 育成이 필요한 部門에 開發資金을 集中供給함으로써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幼稚産業인 機械工業의 育成이라는 두 目標을 同時에 追求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모든 制度金融의 金利를 統一시킨 1982年의 政府의 6.28措置는 올바른 政策轉換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政策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市中銀行의 民營化와 融資對象事業의 妥當性에 對한 判斷能力 提高, 利子率의 流動化와 私金融의 制度金融化 등과 같은 金融正常化 措置가 시급히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2) 需要者金融體제의 擴充

機械工業部門의 資金供給은 特히 大部分 製品이 生産財 내지 耐久消費財인 點을 감안할 때 同部門에 대한 資金供給은 生産者金融보다는 需要者金融(延拂輸出資金 包含)을 大幅 擴大함으로써 需要增進을 도모하는 것이 同工業의 效率的 發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 資金의 경우 金利를 固定시키는 것보다 海外利子率과 聯動시켜(예를 들면 海外利子率에서 1~2% 差減한 水準) 國產機械購入이 外國機械의 購入보다 金利條件面에서 有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國民投資基金 運營體制改善

同 基金은 莫大한 經濟開發所要財源을 安定的이며 長期低利로 確保하기 위한 目的을 갖고 시작되었으나, 基金의 調達方法을 強制預託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에 預託義務機關들에게 資金壓迫과 期待收益의 犧牲을 強要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왔는데 이는 金融機關運營의 自律化 方針에 相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投資基金의 一部를 租稅나 關稅收入에서 調達하여 預託義務機關들의 資金壓迫을 緩和하는 것이 要望된다.

한편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한 同 基金의 量的인 擴充은 基金運用上의 赤字를 補填하기 위한 財政負擔의 增加로 制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支援對象의 嚴選으로 支援規模의 過大한 擴大를 防止하고, 資本市場育成을 통한

企業의 直接金融의 擴大가 要望된다.

다. 租稅·財政支援制度的 改善

租稅減免은 政府가 對象品目 혹은 業種을 選定하기보다는 對象活動(例: 技術開發, 人力開發投資 等)에 對한 間接減免을 大幅強化함으로써 幼稚產業인 機械工業育成이 間接적으로 誘導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一部業種의 경우 效率的 發展을 위하여 政府의 直接的 支援이 꼭 必要하다고 判斷된다면 그 對象은 現在와 같이 大多數의 機械工業製品이 아닌 極少數의 品目에 限定되어야 할 것이며 그 支援方法도 技術開發等を 위한 補助金 支給의 形態를 取하는 것이 보다 效果의 일 것으로 判斷된다.

라. 技術開發政策의 改善

1) 技術革新風土의 造成

機械工業에 있어 우리의 技術水準은 先進諸國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어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데 가장 큰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데, 이는 過去 低賃金, 高인플레이션 因한 負의 實質金利, 政府의 保護支援 등과 같은 企業들에게 有利한 經濟與件의 存續으로 民間企業들이 危險負擔이 큰 技術開發投資를 積極적으로 遂行하지 않더라도 國際競爭力을 維持할 수 있었는데 起因한 것이다. 換言하면 過去 우리의 經濟는 “技術革新은 危險하다. 그러나 技術革新을 하지 않는다면 더 危險하다”는 警告가 適用되는 競爭的 企業環境이 造成되지 않았기 때문에 企業家들이 技術革新을 試圖하는데 積極의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技術開發을 위한 經濟風土의 造成을 위해서는 選別的인 輸入自由化를 통한 市場開放의 促進

과 各種競爭制限行爲를 排除하여 企業間的 競爭을 強化함으로써 技術開發動機를 誘發시켜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新技術製品이 研究開發되었을 경우에 限해서는 政府購買 등의 方式에 의한 時限附 保護支援이 必要할 것이다.

2) 技術開發能力의 提高

技術開發能力을 提高하기 위한 對策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措置가 必要하다.

① 技術教育機關, 研究所 및 企業을 통한 科學技術人力의 養成促進과 同人力에 관한 長短期 綜合需給計劃이 樹立·執行되어야만 한다.

② 先進技術의 導入을 擴大하여 이의 完全消化 및 改良을 圖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外國人直接投資의 獎勵 등으로 外國技術導入環境을 改善하되 同種技術의 重複導入은 止揚되어야만 한다.

③ 自體技術開發을 促進시키되 모든 技術을 順次的으로 開發하기 보다는 戰略的 核心技術을 一次的으로 集中開發하고 이를 基盤으로 上位段階의 尖端技術에 挑戰하도록 하며 先進國이 相對的으로 脆弱한 技術部門을 選定하여 限定된 研究開發資源을 集中投入하여야만 한다.

④ 制限된 研究人力과 資源을 效率적으로 配分·活用하기 위하여 汎國家的인 技術開發體系(R & D Network)를 構築하여 技術開發段階別 連繫性提高와 協力 및 分業體系를 確立하는 同時에, 國內外的 有能한 技術者로 構成된 用役會社를 發足시켜 企業의 技術問題에 대한 諮問을 遂行하여야만 한다.

⑤ 尖端技術獲得을 위한 先進國과의 科學外交를 強化하고 科學技術人力의 海外訓練, 國

際共同研究參加, 頭腦 및 情報의 交流를 積極 推進하여야 한다.

⑥ 國民生活의 科學化, 合理的 國民精神의 培養 등을 위한 汎國民的인 科學化運動을 展開하여 科學技術優位의 社會雰圍氣를 造成하여야 하며 政府 各經濟部處에 「엔지니어」專門 職을 增設하여 重要經濟政策決定에 있어 이들 「엔지니어」들의 充分한 諮問을 받도록 한다.

3) 技術開發을 위한 各種支援制度의 改善

技術開發을 위한 政府의 支援制度는 다음과 같이 改善되어야만 한다.

① 企業의 創意力이 要求되는 産業生産技術 分野에 대해서는 間接的 支援方法으로 技術革新 雰圍氣를 造成하여야 하지만, 半導體, 「컴퓨터」, 精密化學, 精密機械, 生命科學 등의 尖端·未來技術은 投資의 危險性, 投資所要의 大規模性, 懷妊期間의 長期性 때문에 民間企業 單獨으로는 投資遂行이 困難하므로 政府의 間接的 支援뿐만 아니라 補助金 등을 통한 直接的 支援이 必要하다.

② 技術開發投資에 대한 支援強化로 研究開發費의 對 GNP 比率을 現在의 0.61%水準에서 2%水準까지 漸進的으로 擴大하고, 技術開發投資의 政府 對 民間比率을 現行 50:50에서 40:60의 水準으로 民間負擔의 比率을 提高시켜야만 한다.

③ 技術開發先導品目 및 研究用品에 대한 特消稅減免擴大, 技術開發用施設投資의 一時 償却率提高, 民間研究所의 研究用品輸入에 대한 關稅免除 등을 위해 現行租稅支援體制의 改編이 要望된다.

④ 새로운 發明의 企業化(venture capital)에 대한 政府支援의 強化가 必要하다.

⑤ 品質爲主의 政府入札制度의 改善, 技

術導入節次의 簡素化, 官需購買時 技術開發費의 原價反映 등 現行 支援制度의 修正補完이 要望되며, 海外技術動向 및 情報의 迅速한 提供을 위한 工業新聞의 發刊, 技術諮問을 適時에 받기 위한 모든 高級科學技術人力의 名簿 作成 등이 必要하다.

마. 其他 關聯制度의 改善

1) 國產化政策의 改善

가)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擴大

國產機械購入資金은 그 需要에 비해서 支援 規模가 적어 貸出받기가 어려운 反面 外產機械類購入時 提供되는 外國輸出入銀行貸出은 比較的 容易하게 融資받을 수 있기 때문에 外產機械의 購入이 增大되는 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支援條件에 있어서도 資金融資制限(예를 들어 플렌트 國產化資金을 貸出받은 業體는 一般國產化資金을 貸出받을 수 없음)으로 國產機械購入이 不可能한 경우가 많은 反面 外產機械購入時에는 貸出限度上의 制約은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6.28措置以後 國產機械購入資金의 金利引下로 國產機械에 대한 選好度가 提高되었기 때문에 이에 相應한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擴大가 要望된다. 아울러 融資時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別途 擔保要求를 止揚하고 機械自體를 擔保로 設定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야 할 것이다.

나) 「리스」制度의 改善

一般的으로 實需要者가 直接 機械를 購入하는 경우보다 資金 負擔을 輕減시키고, 機械의 陳腐化에 따른 危險을 回避할 수 있는 有利한 需要者支援制度의 하나로 尙장되어온 「리스」制度는 「리스」會社의 機械購買資金에 對한 國內 別途財源造成이 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주로 海外金融에 依存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國內「리이스」實績의 88.1%가 外産機械를 實需要者에게 「리이스」하고 있는 實情이다(表 33 參照). 따라서 「리이스」에 대한 國內資金 調達擴大方案이 要望되며,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制限된 用途에 使用할 것을 前提로 한 金融機關의 優先 貸出方案이나, 「리이스」會社의 社債發行 限度額의 增大와 같은 措置들이 考慮될 수 있다.

다) 플랜트入札의 合理化

플랜트入札에 있어 外國業體를 主契約者로 한 國際入札制를 止揚하고 國內産業設備製作業體 또는 「엔지니어링」會社를 主契約者로 한 國內入札을 實施하며, 高級技術集約部門에 대하여서는 外國業體와의 「콘서시움」形成에 의한 參與를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國産化行政의 改善

國産化 對象品目の 選定에 있어서는 動態的 國際比較優位가 있으며 前後方聯關效果와 輸入代替效果가 큰 品目を 戰略品目으로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表 33〉 「리이스」實績(1977~80)
(단위: 千\$, %)

會社名	計	國産機械	外産機械
韓國 開發 리이스	203,203 (100.0)	36,495 (17.9)	166,708 (81.9)
韓國 産業 리이스	207,346 (100.0)	17,229 (8.3)	190,117 (91.7)
和信타이거리이스	41,191 (100.0)	200 (0.5)	40,991 (99.5)
計	451,740 (100.0)	53,924 (11.9)	397,816 (88.1)

資料: 韓國機械工業振興會

8) 좀더 詳細한 內容은 韓國開發研究院,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에 收錄된 金栽元, 趙振衡,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을 參照바람.

9) 좀더 具體的인 事例에 關해서는 鄭求鉉,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實態』,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을 參照바람.

아울러 國産化 推進에 있어서도 段階的으로 經濟性있는 國産化를 誘導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部品開發 및 輸入과의 合理的인 調整이 있어야 하며 競爭力이 確保되는 品目에 對하여 段階的인 輸入自由化 및 이의 事前 豫示制度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思料된다.

2) 特別消費稅의 縮小調整

特別消費稅制는 특히 電子, 自動車工業의 發展에 큰 障礙要因이 되고 있어 빠른 時日內에 다른 稅源을 發掘, 大幅引下 내지 撤廢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特消費 對象品目の 輸入自由化는 特消費引下와 同時에 實施하여 國內製品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競爭力을 向上시키고 特消費引下에 따른 稅收減少를 關稅增大로 一部 補填함이 바람직하다.

3) 系列化 專門化의 推進⁸⁾

中小企業의 系列化와 專門化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① 技術 및 經營指導體制의 擴充, ② 系列化·專門化 幹旋機構의 設立, ③ 小規模 地方銀行設立의 促進, ④ 對中小企業 金融方式의 改善, ⑤ 代金濟濟方式의 改善과 企業間 協力の 側面支援 및 ⑥ 海外市場의 開拓과 國際間 專門系列化的 幹旋等이 考慮될 수 있으며 이러한 政策의 效果的 遂行을 爲해서는 ① 市場情報의 普及, ② 長期資金의 供給, ③ 創業 및 轉業의 支援 및 ④ 技術人力의 養成과 같은 政策手段을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4) 企業活動에 對한 政府의 不合理한 行政 制限

많은 企業活動에 있어서 政府의 不合理한 各種 行政規制가 機械工業發展의 沮害要因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各種 不合理한 行政規制의 撤廢가 絶실히 要望되고 있다⁹⁾.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各年度.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國民銀行 調查部, 『Factoring 制度』, 1981. 12.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0.
- 勞動部, 『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1982. 1.
- 商工部, 『機械工業振興對策』, 1982. 6.
- 商工部, 『輸出入期別公告』, 各年度.
- 商工部, 『機械國產化推進上の 問題點 및 對策』, 1981. 4.
- 財務部, 『決算書』, 各年度.
- 韓國機械工業振興會, 『機械工業의 現況 및 課題와 對策』, 1982. 2.
- 韓國貿易協會, 『輸入便覽』, 1982.
- 韓國產業銀行, 『80年代의 戰略產業』, 1981.
- 韓國銀行, 『產業聯關表』, 1978.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各年度.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 韓國銀行, 『國民投資基金統計』, 1982.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 金栽元·趙振衡,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 金珍佑,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 韓國開發研究院, 1982. 12.
- 南宗鉉,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 鄭求鉉,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實態』,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 日本銀行, 『產業聯關表』, 1975.
-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1981.
- 日本通產省, 『通商白書』, 1981.
- 日本通產大臣官房調查統計部, 『工業統計表』, 各年度.
-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各年度.
- 勞動法令協會, 『賃金センサス』, 1980.
- 臺灣,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1.
- 臺灣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Industry of Free China*, 1982. 2.
-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1980.
-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1963~1980.
- The Banker Research Unit, *Export Finance Service*, various issues.
- Chi Shive, *Structural Change and Protection Policy of Taiwan Economy*, (mimeo).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判・122 面
高級洋裝・1,200원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判・158 面
高級洋裝・1,800원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執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2,000원
-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判・146 面
高級洋裝・3,000원
-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判・318 面
高級洋裝・4,000원
-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18 切判・254 面
A.O. Krueger 高級洋裝・4,000원
-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洪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判・294 面
高級洋裝・4,000원
-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18 切判・336 面
L.E. Westphal 高級洋裝・4,000원
-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判・202 面
高級洋裝・3,000원
-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3,500원
-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判・508 面
高級洋裝・4,000원
-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492 面
高級洋裝・4,000원
-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342 面
高級洋裝・4,000원
-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判・532 面
高級洋裝・4,500원
-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判・252 面
高級洋裝・3,500원
-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德 著 18 切判・370 面
高級洋裝・3,500원
-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判・244 面
高級洋裝・3,500원
-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3,500원
-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4,000원
-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18 切判・194 面
M. Roemer 高級洋裝・3,500원
- ㉓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判・204 面
高級洋裝・3,5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判・166 面
朴俊卿 高級洋裝・3,500원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判・250 面
林栽煥 高級洋裝・4,0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判・180 面
高級洋裝・3,5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判・192 面
高級洋裝・4,0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判・470 面
高級洋裝・5,5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5,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5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判・270 面
E.S. Mills 高級洋裝・4,5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36 韓國工業化과 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判・336 面
金學泳 高級洋裝・5,500원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18 切判・272 面
N.F. McGinn 高級洋裝・4,5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判・256 面
田英鶴 譯 高級洋裝・4,000원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414 面
高級洋裝・5,000원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384 面
高級洋裝・5,000원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18 切判・268 面
高級洋裝・4,5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18 切判・396 面
潘性純 高級洋裝・6,000원
D.H. Perkins

44 需給構造과 物價政策
李煥 著 18 切判・288 面
高級洋裝・5,0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壹 共著 18 切判・410 面
L.P. Jones 高級洋裝・4,500원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4,000원

④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判・530 面
E.S. 메이슨 高級洋裝・6,500원

⑤0 國民經濟의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判・428 面
閔載成 高級洋裝・7,000원

④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判・228 面
高級洋裝・4,000원

⑤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判・402 面
李軫周 高級洋裝・7,000원

④9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判・432 面
高級洋裝・7,000원

KDI 圖書會員制案內

本研究院은 그간 本院의 刊行物を 필요로 하는 學界 및 企業界의 끊임 없는 購讀要請에 副應하고, 本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보다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國內의 經濟動向과 政府의 經濟政策 등 필요한 學術的 情報를 讀者 여러분에게 보다 손쉽게 傳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製作實費에 의한 KDI 圖書會員制를 實施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會員에 대한 特典

- ① 會員加入期間(1年) 중 本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を 郵送함 (但,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除外).
- ② 本研究院 圖書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2. 會 費 : 50,000원

3. 加入期間 : 年中 언제나 接受하되 接受된 날로부터 1年間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유지됨. 계속 會員資格을 유지하실 분은 有効期間 終了以前에 再登錄을 要함.

4. 加入方法

- ① 직접 本院 出版課에 拂入하거나
- ②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514919)에 拂入하시되 團體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 및 代表者名을, 個人의 경우는 住民登錄番號를 明記해야 함.

5. 其 他

- ① 刊行物 發送料는 本院이 負擔(國內發送에 限함).
- ② 受信處의 變更이 있을 때는 즉시 本院 出版課에 通知해야 함.
- ③ 加入會費 50,000원 외 다른 費用負擔은 없음.

6. 問議處

우편번호 : 13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출판과 (전화 967-3287)